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4. 16. 김동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 4.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아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직장인과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출산·육아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급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현재의 고용보험상 지원체계와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 해소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가 마련되고, 동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는 성격 외에도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출산여성의 모성 보호 및 양성평등이념 실현 등의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 등

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관련 재정 소요가 달라질 것인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담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장철민의원·오세희의원·김동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

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